

지자체 기업유치 노력, 지방세 연계 필요

기업관련 조세 중 지방세 비중은 11%에 불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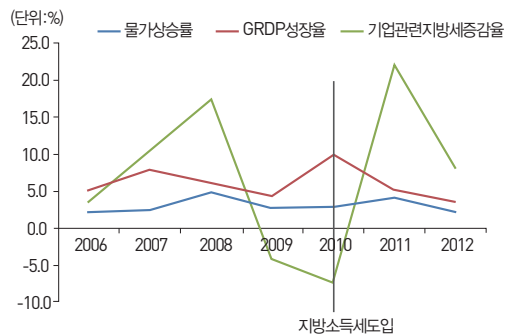
- 기업이 납부하는 조세는 국세인 법인세, 지방세인 지방소득세·주민세로 구성
 - 전국적으로 기업은 법인세 46조 원, 지방소득세 4조 원, 주민세 1조 원 등 총 51조 원 납부
 - 경기도 기업관련 조세는 약 10조 원이며 이중 지방세는 약 1조 원으로, 국세 對 지방세의 비율은 89:11
- 기업관련 지방세는 신장률이 불안정하고, 지역경제성장과 연관성이 미흡
 - 기업관련 지방세는 전반적으로 세수증감폭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
 - 지역경제성장과 기업관련 지방세의 상반된 모습은 지역경제성장이 세수에 미반영됨을 의미

■ 경기도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 및 과제

| 구분 | 조세규모(억원) | | 비중 (%) |
|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| 전국 | 경기도 | |
| 총 계 | 515,854 | 99,224 | 100.0 |
| 법인세 | 459,318 | 88,725 | 89.4 |
| 지방소득세 | 소계 | 44,611 | 8.1 |
| | 법인세분 | 44,611 | 8.1 |
| 주민세 | 소계 | 11,925 | 2.5 |
| | 개인사업자균등분 | 732 | 0.2 |
| | 법인균등분 | 489 | 0.1 |
| | 종업원분 | 9,189 | 1.9 |
| 재산분 | 1,515 | 3.41 | 0.3 |

주 :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는 법인 관련 세액만 제시
 자료 : 안전행정부(2013). 『지방세통계연감』(左) / 통계청(右)

■ 기업조세 및 지역경제지표의 증감률



국세에 편중된 기업관련 조세 구조로 인해 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이 지방세수에 미반영

지방법인세 과세의 필요성

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가 지방세수로 연계되는 매커니즘 강화

-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, 고용창출에 유리한 여건 조성
 - 경기도는 파주 LCD단지 유치를 위해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하고, 해당지역에 대한 공공시설물을 지원
 - 이외에 경기도는 평택 현곡산업단지에 컨테이너 제작 공장 설립, 의왕 포일2사업지구에 자동차 R&D 설비를 위한 투자를 유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
 - 법인세에 편중된 현 구조에서는 지자체의 경제활성화 노력이 지방세수로 미연결

‘공동세’ 방식의 지방법인세로 세무행정의 편의성 확보

- 새로운 세목신설에 대한 조세저항과 조세부담의 완화
 - 공동세는 국가와 지방간 기능배분에 따라 조세의 총액을 일정비율에 따라 배분
 -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위한 절차상의 어려움 없이 지방재정 확충

중구난방식 과세 기준, 기업과세의 대표성 상실과 규모 축소, 기업유치를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을 지방세와 연계하고, 세수는 중앙-광역-기초단체 간 배분

중구난방식 과세기준에 따라 기업과세의 역할 축소

기업관련 지방세의 다양한 과세표준 및 세율로 과세정당성 약화

- 기업과세에 이질적 특성을 지닌 과세기준 혼재
 - 기업관련 지방세에 사용되는 과세기준은 6개 항목으로 분산
 -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구)사업소득세, 지방소득세, 주민세의 신설 및 이관이 반복되면서 상이한 특성을 지닌 지방세가 주민세 세부항목으로 분류
 - 주민세 재산분은 재산세와 중복과세의 문제가 있으며, 사업소 연면적은 기업이 발생시키는 외부비용의 대표성 상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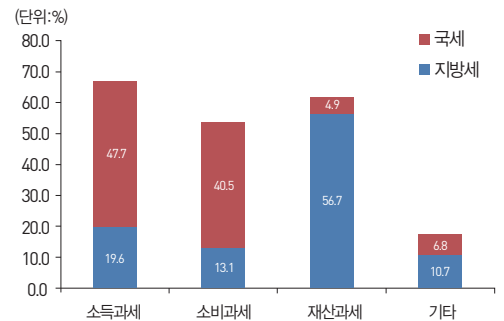
불합리한 지방세 구조로 인해 기업과세분의 지방재정 기여 미흡

- 지방세는 신장성이 낮은 재산과세 위주이며, 국세는 신장성이 높은 소득·소비과세에 편중
 - 지방세 비중은 총 조세의 20%에 불과하나, 지방의 세출규모는 총 지출규모의 60% 부담
 - 기업관련 조세는 국세에 90%, 지방세로 10%가 귀속되어 지방법인세수의 열약성 심화
- 주민세 세율현실화 미흡에 따른 세수 취약성
 - 정액세율로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균등분과 개인사업자균등분, 법인균등분, 재산분은 15~22년간 세율변화가 없이 부과되고 있어, 물가상승에 따른 가치하락분 미반영
 - 기업이 부담하는 주민세는 4개 세부항목으로 구분되고 있지만 총 기업관련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% 수준

■ 기업관련 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

| 구분 | | 과세표준 | 세율 | |
|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
| 법인세 | | 515,854 | 10, 20, 22% | |
| 지방소득세 | 법인세분 | 459,318 | 1, 2, 2.2% | |
| 주민세 | 종업원분 | 44,611 | 0.50% | |
| | 균등분 | 개인사업자 | 44,611 | 5만원 |
| | | 법인 | 11,925 | 5~50만원 |
| | 재산분 | 1,515 | 250원/㎡ | |

■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형태별 구성비(2012)



자료 : 『지방세법』; 국세청(2013), 『국세통계연보』(左) / 안전행정부(2013), 『지방세통계연감』(右)

기업유치 노력을 지방세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 필요

‘지방법인세’ 신설로 기업관련 지방세 재정비

- 기업관련 주민세 세목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으로 통합
 - 세목 통합시의 과세표준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과세표준인 법인소득으로 일원화
 - 지방법인세의 세율은 주민세 통합에 따른 증액분만큼 인상하여 12.7%로 설정
 - 주민세는 개인균등분만으로 구성하여 주민의 회비적 성격 강화
- 지방법인세는 중앙-지방, 광역-기초자치단체간 공동세로 배분
 - 현행 기업관련 조세규모의 국가와 지자체 배분비율은 90:10로 대부분이 국가에 귀속
 - 중앙과의 배분비율은 최소한 국세:지방세 비율인 80:20으로 설정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
 - 현행 지방소득세가 기초단체로 귀속되고 있으므로 기초단체의 과세권이 인정되나, 기업유치를 위한 광역단체의 역할이 적지 않으므로 광역-기초간 공동세로 하위 배분비율로 조정